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93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2.

발의자 : 강명구 · 임이자 · 유상범  
윤한홍 · 최수진 · 김정재  
박덕흠 · 고동진 · 권영진  
엄태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64조제1항).

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